

인천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30807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렬, 신호진, 이동환, 권원경, 김진호, 이수  
연, 박민식, 홍선아, 석연우

피고 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피 고 1.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 주 문

1. 피고 망 B의 소송수계 피신청인 D, E에 대한 이 법원의 소송수계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의 위  
소송수계 피신청인들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망 B와 망 F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망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20. 12. 9. 접수 제5259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의 대위행사업무를 위탁받은 (주)G은 망 B과 피고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655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8.부터 2006. 4. 27.까지 연 5%, 200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4. 확정되었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의 대위행사업무를 변경·위탁받은 원고는 2023. 7. 10.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망 B의 재산 처분

1) 망 B은 2020.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0.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B은 2020. 12. 9. 어머니인 망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5259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인들의 상속 등

1) 망 F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21. 4. 22.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망 B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망 B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5. 1. 사망하였다. 망 B은 사망 당시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었다.

3) 망 B의 형제인 피고 D, E은 2024. 7. 19. 서울가정법원 2024느단5561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4. 8. 2.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형제인 피고 C은 2024. 7. 19. 서울가정법원 2024느단556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4. 8.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 C은 망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 내지 1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피고 망 B의 소송수계 피신청인 D, E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피고였던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5.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피고 D, E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피고 D, E은 망 B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 망 B의 소송수계 피신청인 D, E에 대하여 한 소송수계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의 D, E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갑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9. 당시 적극재산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공시지가 1,579,500원 상당의 전남 함평군 H 대 324㎡ 중 1/4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 2,000만 원, 원금 기준 합계 119,341,480원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망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모친인 망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망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망 F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망 F의 선의 여부

## 1) 피고들의 주장

망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망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망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 F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였다고 볼 수 없다.

## 2)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수익자인 망 F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들은 망 F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F는 2020. 11. 25. 망 B에게 50,126,883원을 송금한 사실, 망 B은 같은 달 26. I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3.까지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망 B은 2020.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9. 망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들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인 망 F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고 망 F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B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